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 훈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행정법이 미결수용에 관한 특칙(참관금지, 분리수용, 이발, 변호인 교통권, 신청에 의한 작업과 교회)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벌집행에 관한 기본법임을 감안할 때 미결구금의 기능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규체계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별도의 미결구금집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국제기준이 정하는 미결피구금자 처우의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29쪽)

② 구금과 수사의 철저한 분리원칙을 입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현행 유치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구금의 집행이 수사당국인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은 유치장 업무담당부서가 수사과이고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사과장으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수사관련부서의 규제 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사당국에 의한 구금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피의자들은 수사상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회유나 협박에 의한 자백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치장 입감 시 정밀신체검사 여부를 유치주무자인 수사과장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외부 진료시 유치주무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이 입회하여 호송하고 있다. 계구사용, 접견권 제한 등이 유치주무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등 기타 참고 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유치주무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 수사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더구나 유치인 처우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사상 필요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유치인에 대한 인식이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구금시설의 부족, 수사의 편의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수사당국의 규제 하에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치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 담당 부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무부서의 지휘하에 있으며 경찰본부의 유치관리과 및 경찰청의 유치관리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수사업무와 유치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다음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유치관리관 이하의 직원이 정기적으로 전국의 유치장을 순회하면서 그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① 유치인의 처우에 관한 일은 모두 유치담당관이 관장하고 수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식사는 수

사관에 의해 취조실 등에서 취하도록 하지 않는다. 접견, 차입(음식물)은 유치업무이므로 수사관에게 신청이 될 경우 반드시 유치 담당관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검사, 소지품 검사 및 소지품의 보관은 유치주임관 책임 하에 진행하며 수사관이 신체검사에 입회하거나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조사나 의료 등을 위한 유치인 호송은 유치주임관의 책임 하에 행해지며 호송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에 관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정된다.

② 유치장은 유치인 일상생활의 장소이고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 활동은 모두 유치장 밖에서 행해진다. 수사관이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은 감시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수사상 필요하여 유치인을 출감시킬 때에는 수사주임관이 유치주임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치인 출·입감은 유치부문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되고 있다.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 활동은 식사, 취침 등의 일과의 시간표를 존중하여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유치장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유치장 업무를 관장하게 하거나, 유치장 관련 업무를 특화하여 교정당국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미결수용실 개념의 경찰서 유치장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③ 변호인 접견권 등 외부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체포, 구속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수적 내용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이다. 접견교통권은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접견은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또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³⁾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찰서 유치장이 변호인 접견실을 수사과 사무실내에 두고 있으며, 시설의 일부가 투명하여 외부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이 계호담당 뿐만 아니라 수사과 전체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화내용이 밖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별도의 시설 없이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해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형사계장실을 접견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접견실 위치가 유치장 외부여서 호송시 수갑, 포승 등 계구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2. 1. 28. 91헌마111

를 사용하게 되고 접견 시에도 그대로 계구를 착용하고 있게 하여 접견시 피구금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규칙』 제33조(변호인과의 접견, 접수) 2항은 '접견 또는 기타 서류의 접수에 있어서 수사장 부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접견 교통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야간 접견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이 자주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접견 이외에 전화통화, 서신 등 교통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에는 외부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유치인은 물론 근무자들도 외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서신은 요청하면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계시, 고지하여야 한다.

구금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로 하는 최소한에 그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외부교통권의 광범위한 보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 인정, 변호인과의 면회를 시설의 장이 제한할 수 없음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변호인 이외의 가족 등과의 면회나 서류, 물건의 수수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근거를 가지고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④ 신체검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현행 신체검사는 『규칙』 제8조에 '피의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9조에 정한 위험물의 은닉소지 여부를 검사한다'고 그 목적을 정하고, '1~4호'에 걸쳐 정밀신체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검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운을 입혀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규칙』의 2000. 8. 14 개정 전 아무런 제한없이 신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알몸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규칙』에서 정밀신체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구속영장발부자, 죄질이 중한 사범,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 그 규정이 모호하고 근거 또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체검사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체검사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단지 옷을 손으로 만지는 수준에서부터 옷을 완전히 벗기고 신체의 구멍 전부를 살피는 수준까지를 모두 신체검사라고 할 때, 간이신체검사와 정밀신체검사의 정도를 어디까지 들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실제 유치장 업무를 담당자들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신체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결파구금자의 기본권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어야 하므로, 신체검사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신체검사에 대해 요건, 방법,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⑤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피구금자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회복할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법상의 권리인 청원 및 소장면담이 있고, 그 외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고소 및 고발 등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수용자의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별도로 청문감사관제도를 두어 경찰관의 불친절,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상담·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장 피구금자의 경우 구금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다 타 구금시설에 비해 유치기간이 짧아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은 사후조치의 의미가 크기에 당사자에게 실의을 제공하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청원권은 수용자가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유치장에는 청원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문감사관제도에 각종 조사과정이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인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유치장 피구금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치장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해놓고 진정방법을 게시해 놓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의 범위나 방법, 처리절차, 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권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서 작성은 보호관에게 요청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4) 지난 2003.1.25 일부 개정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394호)』에 따르면, 제8조를 '흉기등의 검사'에서 '신체등의 검사'로 개념을 변경하고 신체검사의 방법에 '외표검사'를 신설하였으며, 외표검사·간이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신체검사의 종류를 나누고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5) 지난 2003.1.25 일부 개정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394호)』은 제7조 제④항(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및 방법안내), 제37조의2(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제40조(인권침해 진정권의 보장)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인의 권리구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치인 처우 및 권리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유치장 입감시 고지하고 유치실마다 게시하거나 책자를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진정을 위한 집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집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⑥ 유치장 시설환경 및 유치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유치인 설문조사, 시설방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경찰서 유치장 시설환경 및 처우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행 유치장 제도 내에서 그 시설환경 및 처우 실태를 고찰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유치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유치장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1. 유치장 구조

경찰서 유치장 시설은 경찰서 청사의 노후 정도에 따라 시설에 차이가 있으며, 대개 2층으로 되어 있으나 한 개의 층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장 내에는 4~8개(실제 사용하는 거실)의 유치실, 신체검사실, 세면장, 유치인보호관 휴게실, 환풍기, 냉난방기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면회실과 별도의 장소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다.

유치실은 부채꼴 형태로 거실의 전면이 쇠창살로 되어 있어, 거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유치인의 24시간 간수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된다. 유치실의 화장실은 전면이 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미터 남짓의 차례막으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한쪽면이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유치장설계준규칙은 채광, 통풍이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채광, 통풍을 위한 창문이 없거나 있는 경우도 먼지가 끼거나 페인트칠을 해 채광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치실내 밝기 조절은 인공조명을 이용하는데, 이 또한 유치실 밖에서 안으로 조명을 하도록 되어있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야간에도 조명은 그대로 밝혀두고 있다.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는

유치장은 통상 경찰서 2층 이상 층의 남쪽으로 설치되고 유치장 외벽에 창문을 두는 등 통풍, 채광에 배려를 하고 있고 냉난방 장치 등에 의해 24시간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

유치실은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종래의 부채꼴의 설치 형태를 병렬형태로 고치고 거실의 전면을 불투명한 판자로 차단하여, 얇은 유치인의 머리만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간수자로부터 유치인이 상시 감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치실의 화장실은 주위를 벽으로 둘러싼 박스형태로 문으로 밀폐되어 있다. 유치실내에는 다다미 또는 융단이 깔려 있어 일상 생활하는 일본생활 습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불 커버는 신규입감 및 정기교환시 교체되고 침구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야간은 감광을 하여 수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일과

유치인의 일과는 식사시간 외에는 명상 또는 자유시간으로 되어 있어 그 시간에는 대부분 책을 읽게 된다. 그러나 경찰서 유치장에 비치된 도서는 종교관련 서적, 기증 받거나 유치인들이 두고 간 책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서적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며 일간지나 잡지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 TV는 유치장 중앙에 놓여있는 1대로 전체가 봐야하기에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라디오는 비치되어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은 '유치인보호관은 근무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도록' 하고 있어 유치인은 기본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눕는 행위도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기구를 소지할 수 없기에 자유로운 집필이 불가능하고, 피구금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국제조약 등 권리지침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법전이 비치된 곳도 거의 없다.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는

새롭게 수용된 유치인에 대해 입감시 일과시간표를 고지하고 표준시간표는 유치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거실 내 유치인의 행동은 다른 유치인의 평온에 지장을 미치거나 구금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 유치인은 무료로 일간 신문이나 배치해 둔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뉴스, 음악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가 있다. 유치장에는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 조약을 게재한 육법전서를 비치하고 있어 유치인은 언제라도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다. 또한,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활동은 일과시간표를 존중하면서 유치장 밖에서 행하여진다.

3. 식사

유치인 1인당 급식비는 하루에 2,600원(2002년 현재, 1끼당 866.67원)으로 보리밥에 반찬은 단무지, 김치, 짠지 등이다. 경찰서 별로 급식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반찬의 종류나 질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관급식사 외에 차입 또는 구매가능한 음식도 구내매점에서 파는 빵, 우유, 음료수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과일이나 밀반찬 등의 차입은 전혀 불가능하다.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는

유치인의 식사는 국민생활 실정 등을 감안해 양과 질 면에서 충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자격이 있는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영양의 균형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치인은 관급식사 외에 식사, 과일, 과자, 유제품 등을 자기의 부담으로 구입하며, 차입할 수도 있다. 참고로 유치인 한사람 하루 당 식료비 단가는 1994년도에 925엔(약 9,222원)에서 1998년도 1122엔(약 11,100원으로 1식은 3,700원에 해당된다)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건강관리, 위생

아예 운동장이 없어 일광욕이나 옥외운동은 전혀 불가능하고 흡연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다. 세면은 유치실내에 수도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세면도구가 정해진 시간에 지금되므로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목욕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많아 경찰서 별로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본인이 알아서 씻거나 전혀 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검사 외에 별도의 건강진단은 따로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상비약을 구비해 놓은 것 외에 어떠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는

유치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30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옥외운동이 가능하고 이 때 흡연도 허용된다. 적어도 5일에 1회 이상 20분간 목욕을 할 수 있다. 월2회 촉탁의에 의한 정기 건강진단 및 발병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자기의 부담으로 특정의사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유치장 내에 간염 등 감염증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멀균기(유치인이 사용하는 전기면도기나 식기 등을 소독)나 자동손가락소독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5. 여성, 소년, 외국인의 처우

여성 유치인 전용 유치실이 있기는 하지만 구획이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인 남성 유치인보호관은 물론 다른 남성 유치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물론, 화장실 사용시에도 노출될 수 있다.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리중인 경우 특히 곤란을 겪게 되며, 화장품이나 빗을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체장애인용 휠체어나 목발을 비치해 두고 있긴 하지만 구조상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며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전혀 없다.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소년은 남자나 성인 유치인과는 별도의 구획된 곳에 수용되고, 실내에 있을 때는 물론 운동이나 면회시 이동할 때에도 서로의 얼굴이나 모습을 볼 수 없다. 여성유치인의 처우 전반을 여성경찰관이 담당하는 여성 전용 유치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유치인은 몸가짐을 정돈하기 위해 필요한, 화장수, 크림 등의 화장품이나 빗 등을 세면소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 신규입감시 이국에서의 구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통역인이나 「CD-ROM를 사용한 최신식의 자동번역기」를 활용해 유치인의 권리나 유치장내의 일과시간표 등을 알려 충분한 의사 소통에 노력하고 있고, 식사 및 종교 활동 등에도 가능한 한 각각의 습관에 따른 처우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사피의자의 유치장 구금이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인 처우에 관한 규정 또한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⑦ 유치인 보호관 선정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2001년 이후 유치장 근무자의 호칭을 간수에서 유치인보호관으로 개칭하고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호의식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규칙에는 '초임자, 사고징계자, 근무능률저하자, 기타 책임감이 부족한 자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제 유치인보호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유치장 근무 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성 여부나 사명감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채 유치장 업무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유치인보호관이 약 1년 정도 유치장 근무를 하고 있어, 일정기간 배치되는 업무로 여기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조차도 서울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 인력의 부족으로 전·의경과 합동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유치주무자가 순시 또는 교대시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고방지 등을 강조하는 훈시의 일종으로 엄밀한 의미의 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유치주무자 또한 유치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치인보호관들의 근무조건이 유치인들 못지않게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근무처가 유치장으로 유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종일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시간, 적당한 휴식공간의 부재 등 적절한 근무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는

유치인 인권을 충분히 배려한 적정한 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치업무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개개의 경찰직원에 대한 교육·지도를 하고 있다. 경찰관은 채용될 때나 순사부장·경부보·경부의 각 계급에 승진할 때에 경찰학교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각각의 과정에서는 유치인의 적정처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치담당관으로 임용되는 경찰관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약 10일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각 도도부현(우리나라의 도시군) 경찰본부의 유치업무 관리자(경시·경부 계급)와 유치실무 지도자(경부보·순사 부장 계급)에 대해 경찰청에서 약 10일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 2회의 과장 계급의 전국 회의를 통하여 적정한 유치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 경찰 본부의 유치업무 담당과가 정기적으로 관할의 모든 유치장을 지도순시를 하고 경찰청의 유치관리관 이하의 직원도 전국의 유치장의 순회시찰을 실시하여 유치장의 적정관리 운영의 확보와 현장직원 지도에 노력하고 있다.

유치인보호관은 24시간 유치인과 마주하는 당사자이기에, 이들의 자질과 인권의식은 유치인 인권 보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유치인보호관 선정과정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적절한 인력을 선발해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기교육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⑧ 유치장 관리감독 및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차원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순시를 통한 자체 관리감독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다는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은 피의자의 불법체포·구속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피구속자 중 불법 구속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함으로써 피구금자의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고 피구금자에 대한 개별심문을 통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감독 체계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구금시설 감독, 감찰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유치장이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된 장소에서 미결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있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감시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유치장 시설조사

및 유치인 면담을 통해 유치장 시설 및 유치인 관련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치장 감시 및 자문기구 등을 두어 피구금자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다.

이상, 경찰서 유치장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 유치장 관련 법규를 재정비 2. 구금과 수사의 철저한 분리 3. 벤호연접견련 등 외부교통편 설립적 보장 4. 신체검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 5.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 6. 유치장 시설환경 및 처우에 대한 개선 7. 유치장 근무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유치장 개선방안을 언급하였다.

위에 언급한 부분 외에 유치인 처우 및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고지, 집필 및 서신, 의료, 징벌 및 계구의 사용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 부분은 제2장 제3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 언급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더불어 유치장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상의 필요, 신문 및 자백획득의 필요, 범죄에 대한 응징 또는 일반예방의 일환으로 남발되는 미결구금은 억제하고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신병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이외에는 일반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치장 문제의 해결은 미결구금제도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결구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구금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정하는 바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치장 제도를 유치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이스라엘 등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의 폐지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일정기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 기간은 24시간 내지 48시간으로, 그 기간 내에 피의자를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곧 바로 통상의 구금시설인 구치소 등에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결수용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유치장 사고 관련 유치인 감시 관리의 필요성

한 학 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 1. 머리말**
- 2. 본론**
- 3. 사고 사례 분석**
- 4. 신체검사는 필요하다.**
- 5. 위해 요소 개선은 유치인 안전도모**
- 6. 인권 진화적 관점 개선**
- 7. 인권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장안**
- 8. 경찰의 인권보호 실태**
- 9. 향후 경찰의 과제**
- 10. 결맺음**

유치장 사고 관련 유치인 감시 관리의 필요성

한 학 윤(경남지방경찰청)

① 머리말

요즘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사는 바로 “인권보호”라는 단어 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대명사를 논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침해당해서도 아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논함은 정말 귀중한 순간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② 본론

저는 오늘 “유치장 사고와 관련한 유치인 감시, 관리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저의 의견을 발표코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 핵심인 “유치인을 위한 인권 친화적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아무리 그 분들의 인권을 위해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주었다 하더라도 자살이나 자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우선이냐”, “인권이 우선이냐” 가 문제입니다.

유치장의 구조가 1자형이면 어떻고 부채꼴형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안전을 전제로한 환경개선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먼저 밝힙니다.

③ 사고 사례 분석

다음은 사고 사례에 대하여 제가 지난 5년간 유치장이나 검찰 구치감에서 발생한 유치인 자살사건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살사건은 총 11건으로 이중 9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2건은 검찰 구치감에서 발생되었으며, 자살 방법은 90%가 목을 빼어 자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상식으로 목을 빼 자살했다면 자신의 키보다 높은 곳을 이용해서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 중에는 높이 1.5m 2건, 1.3m 1건, 1m 1건, 심지어 95cm 높이에서 자살한 사건도 1건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m 높이에서 자살한 사건은 올해 부산 ○○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장실 출입문 경첩에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 밑단 조임끈으로 목에 자살한 사례이고, 95cm 높이에서 자살한 사건은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신발끈으로 목에 자살한 것으로 이와 같이 1m도 되지 않는 높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자살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여건, 요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살 할 수 있는 위해 물건을 신체 수색 등으로 반입을 차단하다보니 이들은 입고 있던 와이셔츠, 런닝, 내의, 추리닝 등은 물론이며 심지어 양말까지 노끈으로 활용하여 자살 도구로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④ 신체 검색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체 검색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끼고 있는 안경까지도 유리를 조각 내어 동맥절단 등에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은밀히 소지하고 있는 농약 또는 독·극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혐의를 받고 경찰의 추적이나 수배를 받아오던 자들이 겸거 될시 자살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신체 검색 대상자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질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 부산의 모 시장께서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 받던 중 구치감 방실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분도 입고 있던 런닝으로 목에 자살했습니다. 명성이 쟁쟁했던 그런 분이 그 누가 자살 할 것이라고 예견했겠습니까?

얼마전 정치인 한분이 비리로 구속되어 석방된 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을 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참혹한 심정과 자괴감, 수치심 등은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며 누구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감되는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색은 꼭 필요하며 또한 이분들에 대한 안

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복을 개발하여 착의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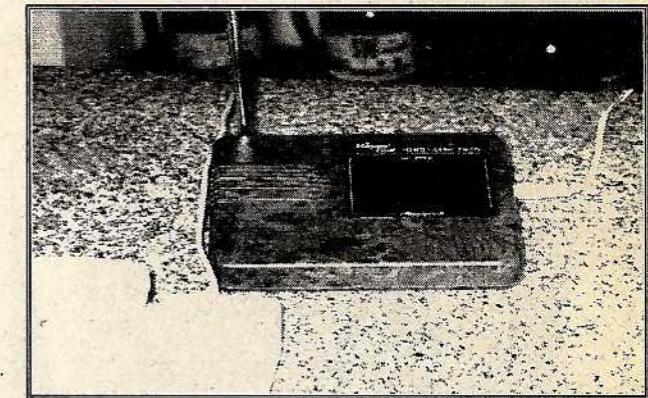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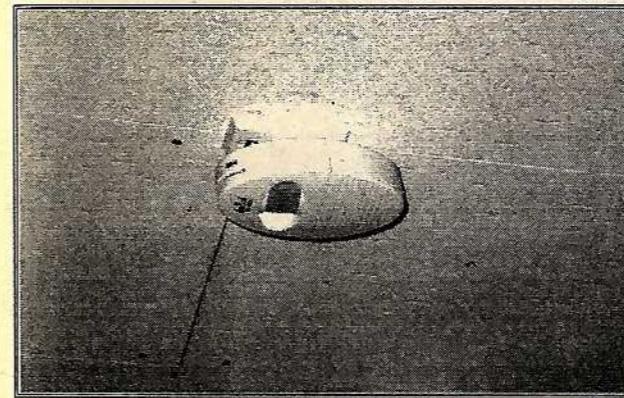
⑤ 위해 요소개선은 유치인 안전도모

다음은 안전시설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m 높이도 안되는 시설을 이용해서 자살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최우선의 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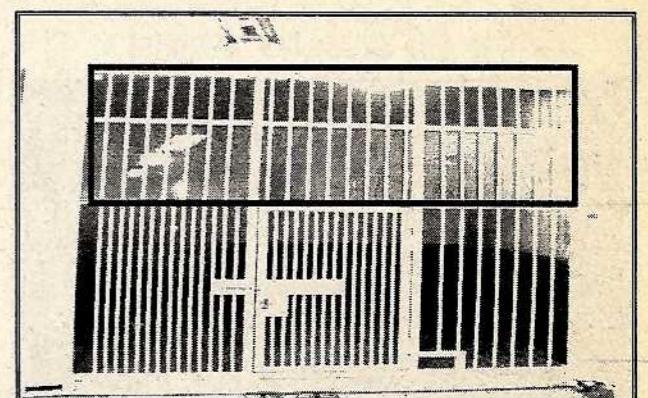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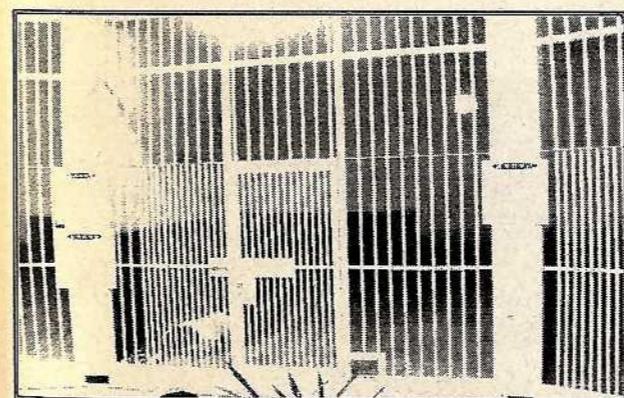
물론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청의 경우

● 감지센스 설치



【유치인이 움직일 때 센스작동】

● 유치창살 고강도 투명 아크릴(폴리카바네트) 설치로 자살미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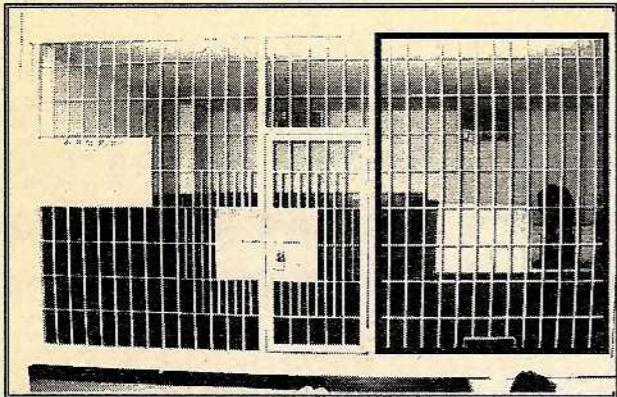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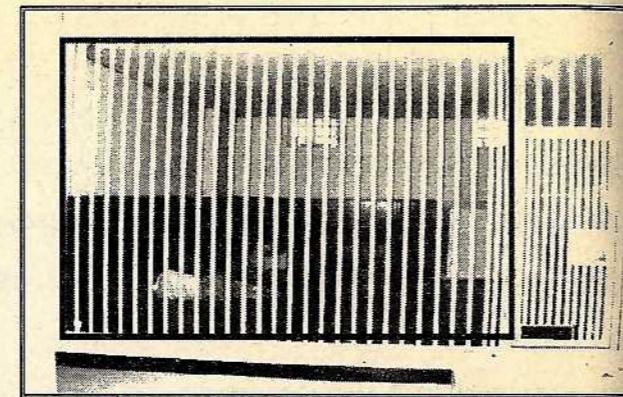
【개선 후】

▲ 가로창살 부분에 폴리카바네트 설치로 자살요인 제거

● 유치창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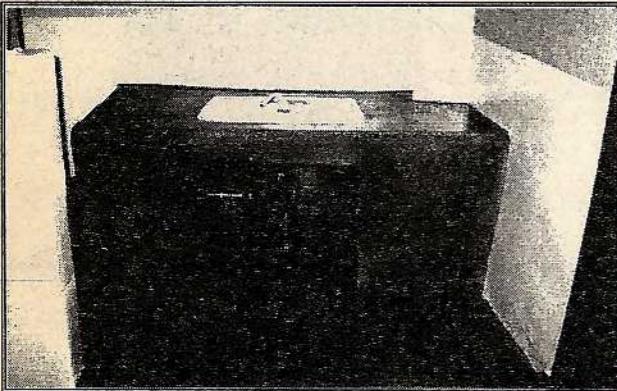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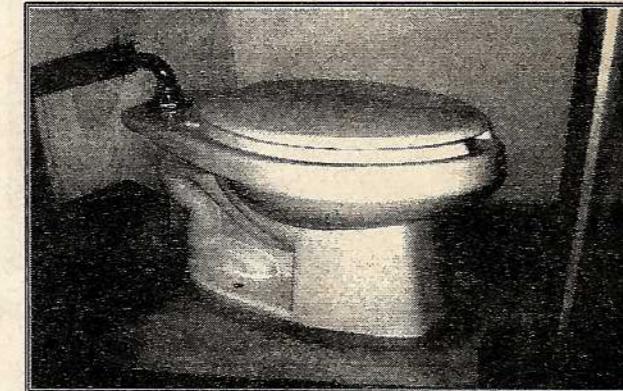
【개선 후】

▲ 가로창살 제거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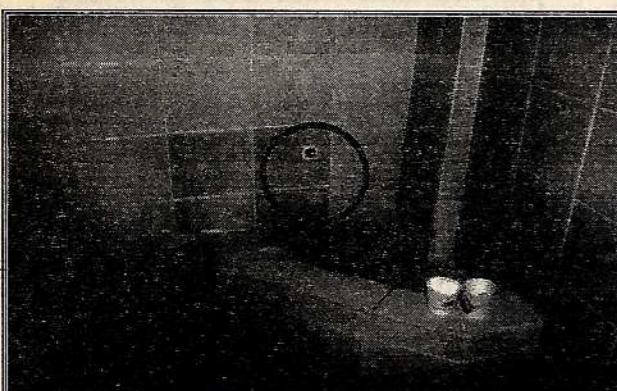
● 자살요인 위해 요소 제거



【수도꼭지 바닥 쪽에 시공된 세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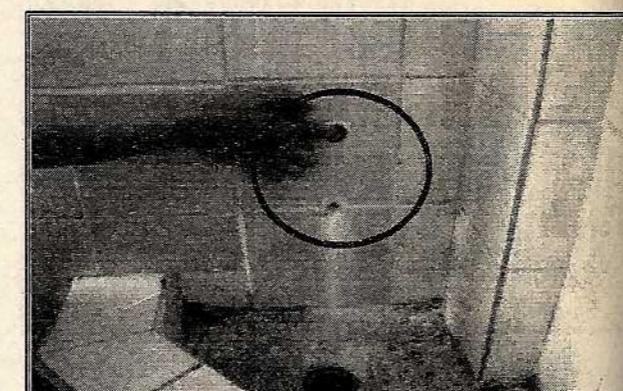


【물탱크 벽속에 시공된 좌변기 모습】



【버튼식 수도꼭지 설치로 돌출부위 제거】

사진 설명과 같이 자살, 자해 등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위해 시설을 제거하는 등 안전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⑥ 인권 친화적 환경개선

우리 경남경찰에서는 2000년 1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유치장을 안방같이 만들어 유치인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인권사각지대가 아니라 아늑하고 폐적한 인권 친화적 교화 공간으로 꾸며보자며 대대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바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인권보호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의 경찰서까지 확대되어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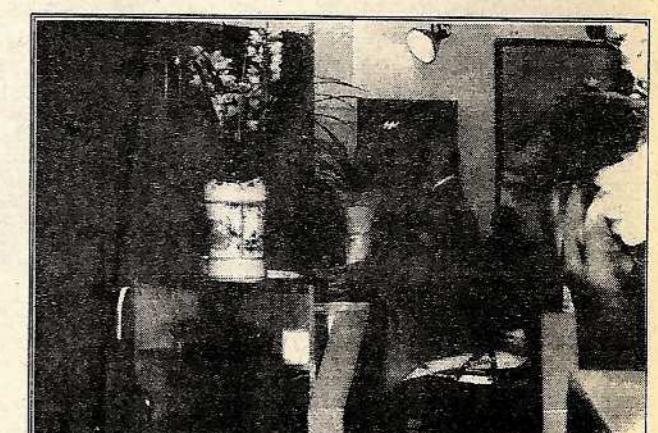
당시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유치장 바닥을 모노륨으로 바꾸고, 냉·난방기, 공기 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꽃과 화분으로 꾸며 정말 안방처럼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한 것 자체가 결국은 유치인 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화·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방 같은 분위기에서 교화·선도



【꽃·화분·그림 등으로 아늑하게 조성된 유치장】



【저명인사 초빙으로 새 삶을 위한 교화·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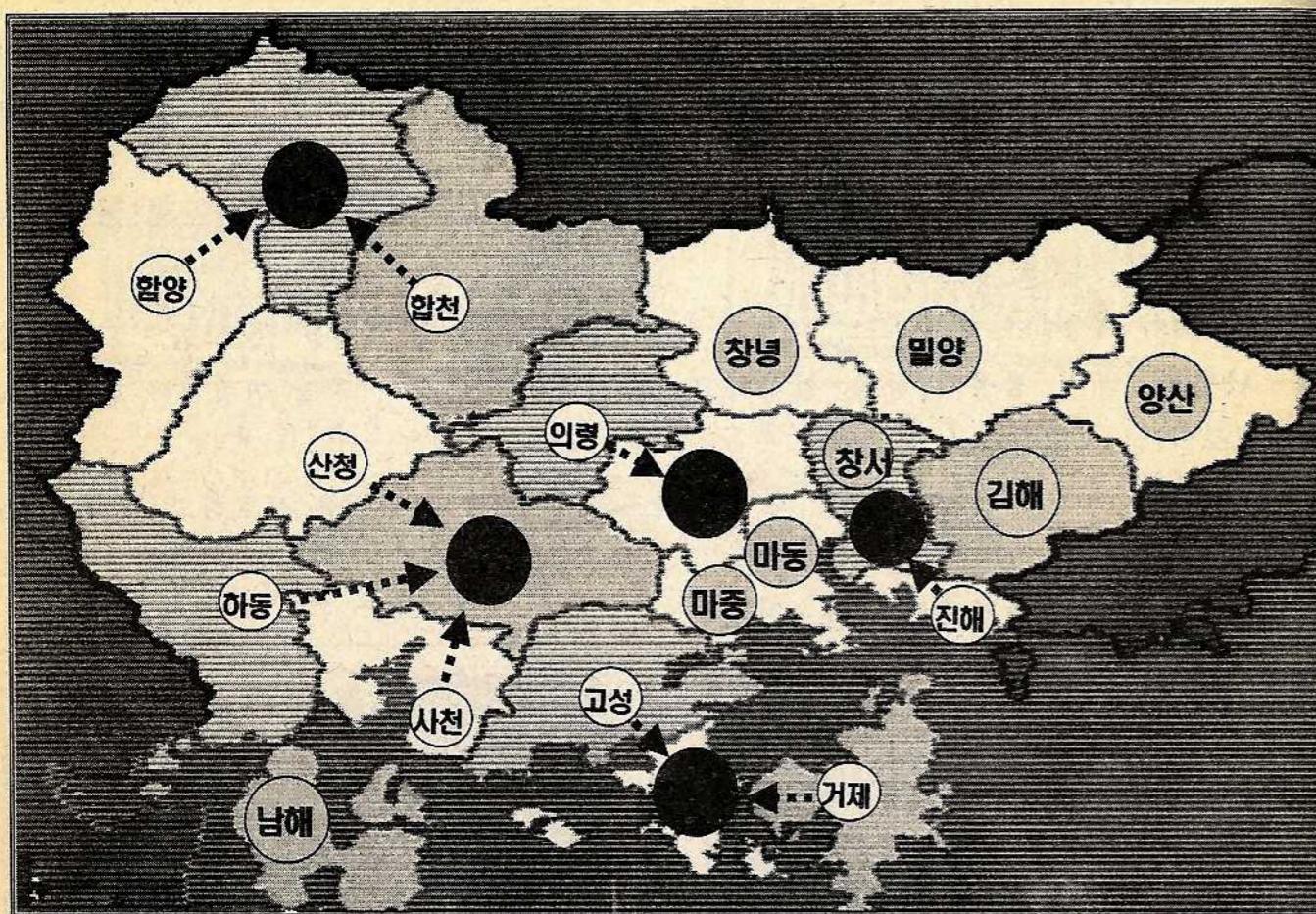
⑦ 인권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창안

【광역 유치장 제도 도입】

저는 유치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리가 가깝고 유치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시골의 2~3급지 경찰서간 유치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제를 창안,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시행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치장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여인력으로 유치인 보호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나아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유치인 보호관의 근무 만족이 유치인에게 접목되어 보다 친절하고 관심 있는 보호를 해드림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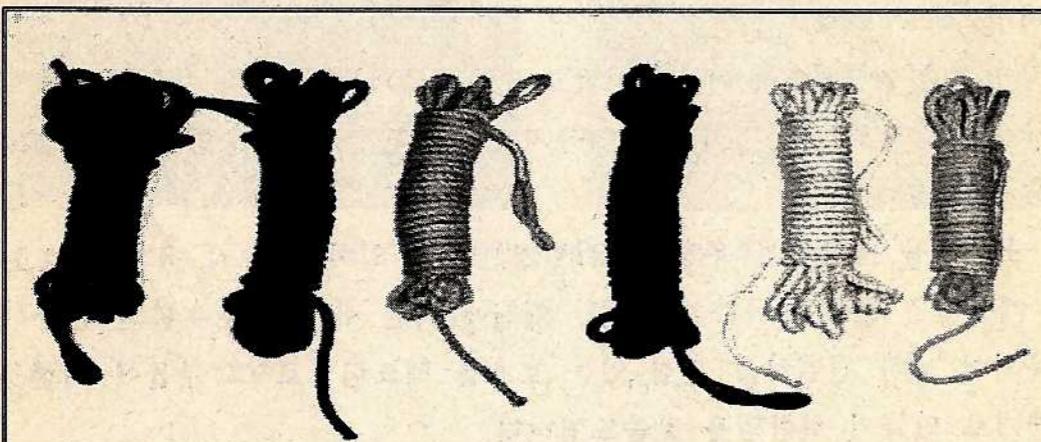
광역유치장 운영도



【칼라 포승줄 사용】

아울러 규범에 명시된 계구 중 포승줄을 사용함에도 피호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칼라 포승줄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도내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칼라 포승줄 제도는 피호송자가 착의하고 있는 옷색상과 가장 가까운 색상의 포승줄을 사용하여 포박된 모습을 최대한 비 노출되게 해줌으로써 심리적 수치심을 최대한 적게 주자는 취지의 창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각종 색상으로 제작한 포승줄



⑧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

이와 같이 우리 경찰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인권시민단체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경찰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기회에 검찰의 인권실태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검찰 청사에 시설해둔 구치감입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70년대 경찰유치장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 신축한 건물은 예외이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오래된 건물인데도 개선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경찰에서 관리하고있는 대용감방이 전국에 11군데 있습니다.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들로 이분들의 원칙적인 관리는 법무부에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 보호하고 교화·선도해야 함에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용감방에 수용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 비좁은 공간에서 수십명이 생활하는 그야말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아니고 길게는 1년 정도이며, 7~8개월도 허다합니다.

경찰서 일반 유치장에 구금된 분들은 평균 5~6일만에 검찰로 송치되어 전문 교정시설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최소한의 권익은 찾습니다만 대용감방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런 중대한 모순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는 않고 허구한날 경찰만 잘하니, 못하니 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검찰에는 겁이나 말씀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31년째 경찰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 세월을 수사 부서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

제가 경찰 초년 시절인 77년도 경남밀양경찰서 대용감방에 약 2년간 근무하였고 또한 그 서에서 대용감방 행정업무를 약 3년간 담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바람은 “대용감방 빨리 법무부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왜 검찰 업무로 고생하고 저 사람들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느냐” 하는 한탄을 수없이 하여 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용 감방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더 묘한 것은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업무를 제가 또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경찰에서는 대용감방 이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찌되었는지 진전이 없습니다. 만약 이 업무가 권력 업무라면 우리 경찰이 하겠다고 해도 진작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지금 우리경찰과 검찰사이에 수사권 조정문제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요구를 못 들어 준다는 가장 큰 원인이 경찰은 아직까지도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계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업무를 경찰에게 맡겨 놓고 잘하니 못하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걱정이 되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잘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외부 참여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대용감방은 하루 빨리 전문교정기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된 그 분들도 옳은 시설과 환경속에서 정당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9. 향후 경찰의 과제

【전문화된 인권시설 완비】

앞으로 우리 경찰도 유치인 인권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합니다

장애인 구속되었을 때에도 어떠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시설, 여성과 남성이 완전 분리되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시설, 약자를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시설등 인권을 위한 전문시설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광역유치장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유치인 보호부서 전환】

지금 경찰에서는 유치인 보호의 주무부서가 수사부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유치인 보호관은 수사전담요원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 사람들의 지휘는 수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요원과 유치인과는 넓게 생각하면 당사자간입니다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또 이분들을 보호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인 보호업무는 청문감사나 경무등 비수사부서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끝 맷 음

우리 경찰은 많이 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장도 개방해서 경찰이 인권을 위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시겠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등 이 나라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권 수호자 분들이 다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경찰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인권을 위해 국민을 위해 잘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저의 의견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친화적인 유치장의 필요성과 신체수색 강화의 문제

허 창 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인가한 변경에 대해

- 1. 일자령 변경에 대해**
- 2. 확장설 차폐막 개선에 대해**
- 3. 구조 개선위해 신체수색 강화?**

인권친화적인 유치장의 필요성과 신체수색 강화의 문제

허 창 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먼저 경찰청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을 마련한 것은 그 시도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의 유치장은 감시 편의 중심으로 설계되어 유치인들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는 물론이고,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들의 수치심까지 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 전용유치장이 하나도 없다는 현실은 한국의 유치장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혀 인권친화적이지도 않고, 감시위주이기만 한 유치장 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환기시설과 조명, 냉난방, 샤워시설, 변호인 접견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경찰청의 '유치장설계표준개선안(이하 경찰청안)' 중에서 일자형 구조로의 변경, 화장실 차폐막 개선, 그리고 신체수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일자형 변경에 대해

경찰청안에 따르면 현재 부채꼴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치장 구조를 개선해 일자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이런 계획에 대해 유치실 간의 상호 노출 방지 및 유치인 보호관의 감시편의를 탈피해 유치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실 일자형 구조로 변경하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권단체들에 의해 요구되었던 부분이다. 부채꼴 구조는 가장자리의 유치인끼리의 사생활 노출로 유치인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남성 유치인과 여성 유치인조차 서로 들여다 볼 수 있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더구나 유치인의 신분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인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임이 인정되어 한다. 그런데 부채꼴 구조는 유치인을 의자에 앉아서 감시하고 있는 보호관의 시선에서 단 몇초도 벗어날 수 없는,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상황에 놓여있게 만든다. 유치인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심리적 불안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성립할 수조차 없는 조건에

놓여 있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서 유치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유치인들의 기본권 또한 합리적인 목적에 의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 외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제한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의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당연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형으로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경찰청은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격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이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일자형 구조로 변경하게 될 경우 감시사각이 발생해 지금과 같이 한자리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유치인들은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잡아둔 사람들이지 유치인이라는 말 자체가 24시간을 연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한 감시가 목적이기 보다는 유치인들이 혹 발생 시킬 수 있는 자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시의 사각이라는 말은 보호관의 편의만을 위한 말일 뿐이다. 감시라는 말이 맞지도 않거나 감독¹⁾에 있어서 사각이 존재한다면 이는 경찰청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순찰형 관리체계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인력을 보충하면 되는 문제지, 구조변경을 반대할만한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본다.

또 일자형으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자살·자해 사고의 적시적인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유치장을 제외하면 모든 구금시설이 일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도소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구금시설이 일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해·자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통계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경찰청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과 영국, 일본 등의 유치장이 일자형임은 물론이거니와 병렬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일자형 구조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오히려 자살·자해 사고는 열악한 유치장 환경과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따라서 일자형 구조로의 변경은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일본처럼 유치장 전면도 쇠창살을 통한 개방형이 아니라 밀폐형²⁾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독일과 영국처럼 철문을 통한 완전밀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일본처럼 강화플라스틱을 통한 차단과 앉았을 때 머리부

1) 보호관이란 명칭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듯이 '보호'라는 차원의 감독

2) 또는 밀폐와 개방의 절충형

분만 보이도록 하는 최소한의 밀폐는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본다.

② 화장실 차폐막 개선에 대해

현재의 유치장은 대부분 1M높이의 차폐막만이 설치되어 있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모습이 유치인 보호관에게 은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가 용변을 보면서 유치인 보호관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곳도 있다. 더구나 소리³⁾나 냄새의 노출로 유치인이 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도소인권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2002년에 실시한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차폐막의 높이는 일어섰을 때 엉덩이 높이 이하가 60%에 이르고, 차폐막 높이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의견이 8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유치인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용변을 참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게 되면 차폐막 때문에 몸을 구부려 옷을 내리고', '유치인보호관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민망한 생각에 얼른 고개를 돌려야 하고', '용변 보는 소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몸서리를 쳐야 하며', '행여 냄새가 퍼져 같은 방을 쓰는 유치인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온갖 고뇌와 수치심을 느끼며 볼일을 봐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유치장 화장실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은 차폐막 높이를 일부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유치인이 인격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밀폐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장 내에서의 자살·자해 사고의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중앙 경찰학교에서 2002년 발행한 '유치장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13건의 유치장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자살이 7건, 자해가 2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총 13건의 사고 중 유치장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그 외의 화장실 사고도 감시가 소홀하거나 개인 소지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지방 검찰청 등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개인소지품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통제되거나 휴대하기 어려운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살·자행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③ 구조 개선 위해 신체수색 강화?

경찰청에 따라 유치장의 구조와 환경을 개선할 경우 유치인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

3) 꼭 유치인이 아니라도, 사람은 '볼일'을 은밀하게 혼자서 보고 싶어 한다. 지금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싫어서 먼저 물을 내리곤 한다.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공권력이 지켜야 할 보호법의 범주내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 위해 유치 전 신체검사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치장에서의 신체검사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되, 구속영장발부자, 살인·강도·강간 등 죄질이 중한 사범,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검사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유치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알몸수색을 금지(2002년 위헌 판결)하고 있고, 일부 유치인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장의 신체검사는 증거물의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처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수색'과 달리 행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유치인의 안전, 위해방지, 유치장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는 목적을 벗어나 유치인에 대한 수색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유치장 구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신체검사의 수준을 벗어나 정밀검사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형사소송법상의 수색처럼 강제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대부분이 유치인이 자살·자해 등을 위해 미리 준비한 금속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두끈, 바닥에 떨어진 면도칼, 칫솔, 런닝셔츠, 양말 등을 이용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 몸에 특별히 어떤 장비를 숨겨서 들어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있는 이용 가능한 의류 등을 이용한 사고가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신체검사의 강화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경찰청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돌출형 수도꼭지 등의 버튼식 교체, 매달 수 있는 창살 등의 제거를 통해서, 그리고 사고가 예상되는 유치인에 대한 유치인 보호관의 지속적인 감독활동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유치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사고발생비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그야말로 근거가 별로 없는 추측과 우려일 뿐이다. 그 우려와 추측만으로 유치인에게 심한 수치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인권친화적으로 유치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애초의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굳이 강화해야 한다면 그 방향이 강제처분, 정밀신체검사의 강화, 알몸 수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금속탐지기 등의 장비를 통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의 유치장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한다.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에 아니라 단지 감시의 어려움, 사고발생 우려를 이유로 구조 개선을 반대하거나 신체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치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경찰의 감시편의만을 앞세우는 것이라 생각된다.

유치인 보호관의 근무체계를 바꾸는 것으로도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유치인들이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노력일 수 있다.

다만 경찰청안에 따르면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운동장 관련 규정을 유치인 보호관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필요하다면 인력의 확충, 유치장의 지역별 통폐합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 해결해야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운동 등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이 이런 식의 토론을 통해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런 노력이 새롭게 출범한 인권보호센터에 의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많은 현안도 이렇게 열린 토론을 통해 해결해나갈 때,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게 될 것이다.

일본유치장과의 비교 및 유치장 운영의 개선방안

김 성 중

(경찰청 특수수사과)

1. 日本의 유치장
2. 유치장 운영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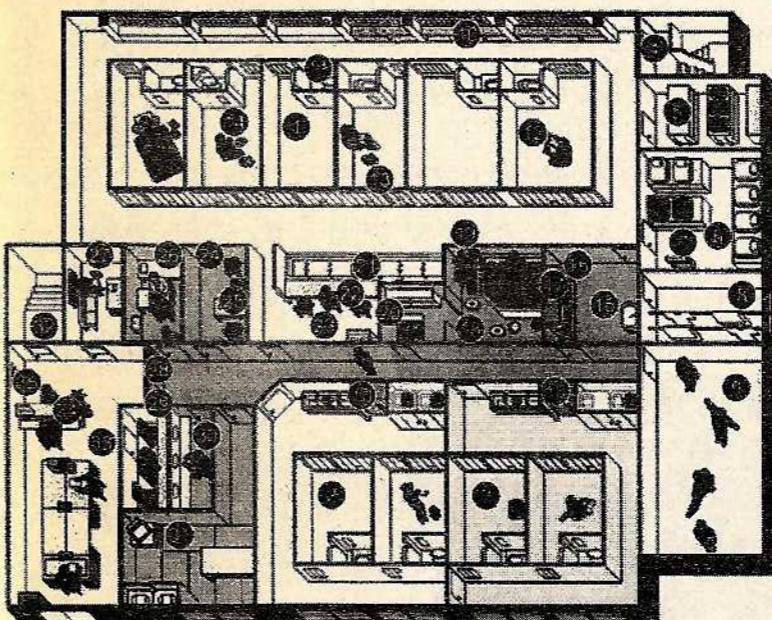
일본유치장과의 비교 및 유치장 운영의 개선방안

김 성 중(경찰청 특수수사과)

① 日本의 유치장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경찰서에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수는 약 1,300여 개이다. 일본 유치장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 유치장의 構造와 設備, 유치장에서의 留置人의 管理實態 및 被疑者 逮捕 및 拘禁節次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留置場의 構造와 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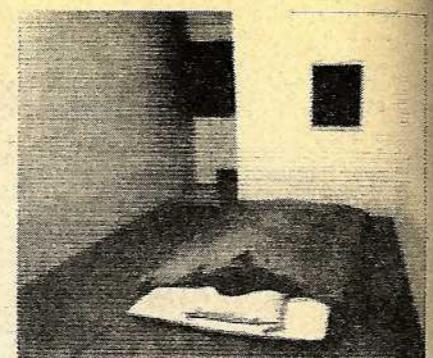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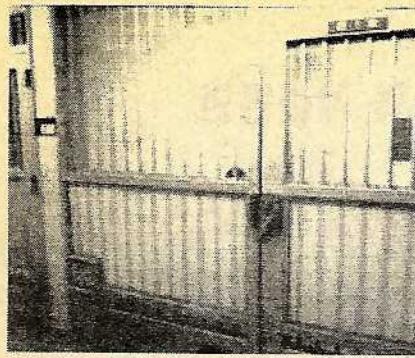


- 1 성인남성유치실
- 2 소년 유치실
- 3 여성 유치실
- 4 비상구
- 5 창고
- 6 침구 수납고
- 7 이불 건조기
- 8 물건 건조장
- 9 운동장
- 10 소지품 보관고
- 11 화장실
- 12 신문
- 13 육법
- 14 과자
- 15 세탁소
- 16 전자동 세탁기
- 17 세탁물건조기

- 18 욕실
- 19 샤워
- 20 탈의실
- 21 세면소
- 22 간수자석
- 23 냉장고(자기부담식료보관)
- 24 신체검사실
- 25 금속탐지기
- 26 진료실
- 27 대합실
- 28 예비출입구
- 29 유치장출입구
- 30 접견실
- 31 간수휴게실
- 32 호송용 계단
- 33 유치사무실
- 34 접견 등 접수
- 35 유치장 출입구

2. 留置場 管理實態

1) 留置室



유치실은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종래의 부채꼴의 설치 형태를 竝列形態로 고치고 거실의 前面을 불투명한 판자로 遮斷하여, 앉은 유치인의 머리만이 보이도록 함으로 써 간수자로부터 유치인이 상시 감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치실의 화장실은 주위를 벽으로 둘러싼 박스형태이다. 유치실내에는 다다미 또는 용단이 깔려 있어 일상 생활하는 일본생활 습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유치장은 통상 경찰서 2層以上 層의 남쪽으로 설치되어 유치장의 통풍, 채광에 배려를 하고 있고 냉난방 장치 등에 의해 24시간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불 커버는 신규 입감 및 정기교환시 교체되고 침구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야간은 減光을 하여 수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2) 日課

새롭게 수용된 유치인에 대해 入監時 일과시간표를 告知하고 표준시간표는 유치인이 잘 보이는 곳에 揭示한다. 거실 내 유치인의 행동은 다른 유치인의 평온에 지장을 미치거나 구금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 유치인은 무료로 일간 신문이나 배치해 둔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뉴스, 음악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가 있다.

유치장에는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 조약을 게재한 육법전서를 비치하고 있어 유치인은 언제라도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다. 또한,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활동은 일과시간표를 존중하면서 유치장 밖에서 행하여진다.

3) 식사

유치인 식사는 국민생활 실정 등을 감안해 양과 질 면에서 충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자격이 있는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영양의 균형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치인은 官給食事 외에 식사, 과일, 과자, 乳製品 등을 자기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차입할 수도 있다. 참고로 유치인 한 사람 하루 당 食料費 단가는 1994年度에 925엔(약 9,222원)에서 1998年度 1122엔(약 11,100원으로 1食은 3,700원에 해당된다)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健康管理,衛生

유치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30分 (희망하는 경우에는 1時間 이상)의 屋外運動이 가능하고 이 때 吸煙도 허용된다. 적어도 5日에 1回 이상 20分間 목욕을 할 수 있다. 月2回 曇託醫에 의한 정기 건강진단 및 發病時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場外病院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자기의 부담으로 특정의사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유치장 내에 에이즈나 간염 등 감염증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멀균기(유치인이 사용하는 전기면도기나 식기 등을 소독)나 자동손가락소독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5) 女性,少年의 配慮

여성이나 소년은 남자나 성인 유치인과는 別途의 區劃된 곳에 收容되고, 실내에 있을 때는 물론 운동이나 면회시 이동할 때에도 서로의 얼굴이나 모습을 볼 수 없다.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나 목욕의 입회는 반드시 여성 경찰관 또는 여성 직원이 하고 있고 여성유치인의 처우 전반을 여성 경찰관이 담당하는 여성 전용 유치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유치인은 몸가짐을 정돈하기 위해 필요한, 화장수, 크림 등의 화장품이나 빗 등을 세면소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같고 언어나 종교, 식생활, 생활 습관 등의 차이를 배려한 처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치장에의 신규입감시 이국에서의 구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통역인이나 「CD-ROM를 사용한 최신식의 自動翻譯機」를 활용해 유치인의 권리나 유치장내의 일과시간표 등을 알려 충분한 의사 소통에 노력하고 있고, 식사 및 종교 활동 등에도 가능한 한 각각의 습관에 따른 처우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3. 운영

유치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 담당 부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부서의 지휘하에 있으며 경찰본부의 유치관리과 및 경찰청의 유치관리관의 監督을 받고 있다.

수사업무와 유치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다음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유치관리관 이하의 직원이 정기적으로 전국의 유치장을 순회하면서 그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① 留置場 入監時 告知

유치인의 처우에 관한 일은 모두 유치담당관이 관장하고 수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② 留置場 出入者統制 等

유치장은 유치인 일상생활의 장소이고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 활동은 모두 유치장 밖에서 행해진다. 수사관이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은 수사관이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암박감을 유치인이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수사상 필요하여 유치인을 출감시킬 때에는 수사주임관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한 다음, 문서에 의해 유치주임관에게 요청하고 유치주임관이 그것을 승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관이 유치인의 처우에 관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도록 수사와 유치 양쪽 책임자가 통제를 하고 있고, 유치인 출?입감 시간은 유치담당관에 의해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유치부문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되고 있다. 이 기록은 재판관등의 요구에 의해 공판정에 제출되는 것도 있다.

아울러 日本憲法은 “어떤 사람도自己에게 不利益한 陳述을 強要받지 않는다”라고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부당하게 억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백은 증거로 할 수가 없다. 때문에 공판정에서도 진술조사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다.

③ 日課時間表의 尊重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 활동은 식사, 취침 등의 일과의 시간표를 존중하여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무시간외에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유치장의 일과시간표에 정한 취침시간을 지나 신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유치부문으로부터 수사부문에 신문중단 요청을 하고, 만일 취침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이튿날 아침의 기상시간을 늦추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해 충분한 수면시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④ 食事提供

식사는 유치인의 처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취급되므로 수사관에 의해 취조실 등에서 식사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다.

⑤ 接見, 借入(飲食物)의 取扱

접견, 차입(음식물)은 유치업무이므로 수사관에게 신청이 될 경우 반드시 유치 담당관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⑥ 留置人 身體檢查, 所持品의 保管

유치장 입감시 유치인의 안전 확보와 유치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유치담당관이 신체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유치인이 흉기나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신체검사, 소지품 검사 및 소지품의 보관은 유치주임관 책임 하에 진행하며 수사관이 신체검사에 입회하거나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 留置人 護送

검찰조사나 의료 등을 위한 유치인 호송은 유치주임관의 책임 하에 행해지며 호송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에 관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정된다.

② 유치장 운영의 개선 방안

1. 행형법 및 관련법규의 정비

유치장의 인권침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형법의 개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留置라는 개념이 어느 법률에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규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통괄하는 법규정이 없다.¹⁾ 따라서 경찰행정작용법적 성격이 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만 근거하여 형사피의자를 유치하도록 두지 말고, 구금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行刑法上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유치장 관련 단행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유치장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위헌 확인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 차폐 벽을 기존의 구조에서 조금 높여 수세식은 75cm, 좌변기는 100cm정도로 맞추고 (사람이 앉았을 때 눈 높이 정도의 높이임), 환풍시설도 새로이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留置場設計標準規則에서 좀 더 具體化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 유치장설계준규칙 제9조(화장실) 제1항에 “화장실은 대변소를 2실 이상 설치하고 소변소를 부설하여야 하며 대변소의 문은 간수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부분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3항에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유치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할 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장실 차폐벽 높이도 1층 구조냐, 2층 구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1) 더구나 행형법, 즉 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확정판결이전의 미결수 및 拘留刑 집행자까지 유치장에 수용하도록 되어있어 유치장이 구치소 및 교도소의 역할까지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비전문가가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2. 정밀신체검사의 허용요건 강화

2000年 11月 10日에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4·13 총선'을 앞둔 3月, 경기 성남 남부 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성남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알몸수색을 당한 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털 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 등 안전 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밀 신체검사가 그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면 위법이고, 또한 방법 역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는 개정되는데, 그 내용은 구속영장발부자 와 중범에 대해서는 '정밀신체검사'를 계속 시행하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유치인의 경우는 '간이신체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무차별적 정밀신체검사의 관행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동 규칙 제8조는 2003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는데, 과거의 두 가지 방법 외에 '외표검사'라는 경미한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규칙에서도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1) 신체검사의 세분화

현행 유치인의 신체검사는 과거에 비해 3단계로 나누어지는 등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그 개념 및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찰관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일명 PACE" 『시행령 A』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同 規定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체수색에 있어 적어도 4가지 다른 단계 또는 범주의 수색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범주의 문제는 주로 수사되고 있는 범죄의 성질과 수색이 실행되고 있는 장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체수색의 개념 및 절차를 세분화하여 정밀신체검사의 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표면적 수색(superficial search)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수색으로 걸옷에 대한 외부적 조사로 제한되는 수색을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걸옷이나 장갑 같은 의복류를 벗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외부적 조사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수색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오기 전 단계로 불심검문 시에 행하여지는 수색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전면적 수색(full search)

속옷을 제외한 신발류와 같은 걸옷을 벗도록 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수색을 뜻하며 현행 규칙상 간이신체검사를 말한다. 걸옷, 장갑, 머리장식물 또는 신발류를 벗으라는 정도의 수색으로 용의자와 동성의 경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알몸수색(strip search)

알몸수색은 정밀한 신체수색은 아니다. 알몸수색은 걸옷이상의 제거와 관련된 수색을 말하며 피구금자에게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실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밀신체검사에 해당하는 알몸수색과 관련된 규칙들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속옷의 일부 혹은 전부를 벗도록 요구되어질 때이다.

(4) 정밀한 수색(intimate search, 은밀한 곳에 대한 수색)

정밀한 신체수색²⁾은 입이 아닌 신체의 다른 구멍에 대한 물리적 조사로 이루어진 수색으로 정의된다. '신체구멍(bodily orifice)'은 귀, 콧구멍, 항문, 성기(생식기) 등을 포함한다. 신체의 구멍에 물리적 삽입은 정밀한 신체수색의 범주에 이르는 것이며, 신체구멍 안의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그 인접한 주변에 대한 어떤 힘의 행사가 될 것이다.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정밀한 신체수색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색은 신체의 구멍 안으로 행해지는 수색이다. 그것은 단순한 알몸수색이 아니고 관련된 사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처음 입법당시의 PACE법 하에서 정밀한 신체수색의 조건 때문에 피의자의 입안에서 마약을 꺼낼 수가 없었으나, 1993년 형사사법에 대한 왕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정하였는 바,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가 입안에 숨겼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의 신체검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불비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근거와 요건

정밀신체검사는 유치장에 수감되는 피의자의 자해 또는 증거은닉, 유치인 간의 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시민의 수치감을 극대화하고 프라이버시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므로 이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당한 피의자가 겪는 증상으로 '충격, 공포, 의기소침, 수치감,

2) 정밀한 수색의 개념은 「경찰과 형사증거법」 65조에 "피의자의 입을 제외한 신체의 구멍에 대한 물리적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분노, 모욕감, 그리고 악몽'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강간피해자의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밀신체검사는 '관찰에 의한 강간(visual rape)'이 라는 이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인권침해의 정도 역시 매우 강한 정밀신체검사가 단지 경찰청 훈령에 의해 근거 지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시급히 법률에 의하여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근거와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2002年 7月 18日 현법재판소에서는 전술한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여성 유치인에 대한 알몸수색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결정³⁾을 함으로써 유치인 신체검사시 엄격한 요건준수 등 인권 우선 배려조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유치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는 재판이나 수사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유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인의 자해, 증거은닉, 유치인 간의 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정밀신체검사는 유치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이 경찰청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유치장내 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

1) 외국의 경우

선진국 대부분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美國 뉴욕시경과 휴스턴경찰청內 구치소에서는 소내 질서문란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독방감금 혹은 족쇄(Leg Iron)를 사용할 수 있고, 시카고경찰은 i) 피의자를 다른 지역으로 호송할 때 ii) 경찰서내에서 소란, 난동을 부릴 때 iii)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등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족쇄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日本에선 흉악범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갑옷형 족쇄를 온몸에 채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⁴⁾

3) 결정이유에서 "유치장 수용자의 정밀신체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체포된 현행범으로 흥기소지 등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자해의 우려도 없었던 만큼 피의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는 알몸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 중앙일보 1999년 2월 6일 30면.

獨逸의 경우

- i) 일과시간표 등 수형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을 법률이 규칙으로 제정하여 수용 시에 수용자가 이를 주지하도록 하고 있다.
- ii) 수형자의 거실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색, 위험한 수형자의 격리 또는 독거수용, 체포, 결박 기타의 특별안전조치 등으로 위험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 iii) 다른 방법으로써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과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로서 작용하는 직접강제를 행하고
- iv) 수형자의 선행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는 반면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벌을 가한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치장내 질서문란자에 대하여 경찰상의 강제수단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나라 경우 족쇄사용은 불법시 되고 있으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⁵⁾ 족쇄사용과 관련되는 규정은 행형법상 계구의 사용이다. 원래 戒具는 수용자(기결수 및 미결구금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戒具의 종류로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등 4種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戒具는 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戒具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 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장 내에서도 유치인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행형법상 4가지 종류의 戒具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경찰장구에는 수갑, 포승이외에 계구의 일종인 사슬이나 안면보호구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수갑, 포승을 제외한 일체의 戒具는 유치장내에 비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⁶⁾

한편, 경찰청이 제시하고 있는 교양내용인 「유치인의 유치실내 소란시 대처방법」은 "유치장내 소란시 상황실에 긴급연락(비상벨 이용)하고 신속히 대처하되 소란을 피운 유치인은 빤 유치실에 수감토록 하고, 소란사항을 작성 후 기록에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과 법원에 보고하여 양형에 고려토록 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소란 및 질서문란 시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신속히 대처"라고만 지시하고 있고 현실적인 제지수단이 없으므로 적절한 제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유치인들의 인권침해는

5) 경찰청은 지난 1999년 3월 14일 일부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에게 채워 온 「족쇄사용」이 인권침해라는 사회적 물의를 빚자, 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아울러 해당경찰관과 관서장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규정을 1999년 5월 24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족쇄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수갑 및 총기사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장비사용규정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1999.11.27 대통령령 제16601호)을 제정하였다.

6)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 2항

방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와 한계, 요건에 관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며, 즉시강제수단 동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하다. 결국, 유치장 내에서 사고발생시 개별 경찰관에게만 귀책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고 소신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유치인의 정밀신체검사 거부시 유치인에게 신체검사의 취지를 설명, 양해와 설득을 구하되 유치인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간이신체검사를 실시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정밀신체검사를 포기하라는 식의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흥기나 금제품, 유력한 증거물을 은닉한 악의적 유치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⁷⁾

신체수색여부를 유치인의 동의에 의존하는 경찰관의 이러한 법 집행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법적 근거 검토

유치장내의 질서문란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경찰상의 조치가 매우 미흡할뿐더러 실무차원의 법령인『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서조차 이러한 유치인 제재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대다수 유치인들의 인권침해가 방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치장내 질서문란자 등에 제재로서의 戒具의 사용은 이를 징벌수단이 아닌 경찰상 직접강제수단(unmittelbares Zwangsmittel)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결수용자인 유치인과 기결수인 구류형 집행대상자가 유치장에서 행형법 제46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동법을 근거로 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⁸⁾ 뿐만 아니라 「재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991.3.14 법무부령 제349호)」 역시 수형자, 미결수형자 및 감호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위반에 대한 징벌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인인 미결수형자, 구류형집행자는 수형자에 각각 해당함으로 이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동규칙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유치인 신체수색 문제는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안전문제 그리고 증거발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것인 바,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흥기나 금제품 등을 소지, 은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전제된 정당한 정밀신체검사의 거부시 경찰관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형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법상의 경찰권 발동 혹은 경찰권 개입, 개괄적 수권조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7) 임준태, 2001, pp. 469-470.

8) 행형법 제46조(징벌) ①收容者(수형자 및 미결수용자)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懲罰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흥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한 행위
②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警告 2.1月이내의 新聞 및 도서열람의 제한 3.2月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2月이내의 禁置

4. 개별서 유치장 축소, 지역유치센터 설치

우리 나라와 선진국들의 유치장실태를 비교하여 보면 그 시설 및 운영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별로 ‘유치인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경찰서 유치장을 통합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 경찰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개별 유치장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통합하여 유치장관리센터를 건립하여 기존 유치장을 폐쇄하고 인력·시설을 타 기능으로 활용하며, 유치실, 면회실, 접견실, 조사실, 목욕실, 세탁실, 24時間 냉·난방을 유지하는 현대식 시설을 완비함은 물론, 조사 및 호송을 위한 전담 호송차량을 준비하여 호송 및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유치장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통폐합 운영에 따른 유치인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 유치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운영이나 예산 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첫째, 기존 유치장을 규모와 시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유치장의 경우 그 시설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주변의 열악한 경찰서 유치장을 흡수 통합하는 단기적 방법이 있고,

둘째, 정부예산계획에 의거 현재 진행중인 노후된 경찰서의 신축 또는 개축 시에 충분한 규모를 가진 유치센터를 보완 설치하는 장기적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통한 유치장 운영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장 시설 및 인력배치 편차 극복⁹⁾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경우, 유치실은 평균 12개실 전후(6~16)이지만,¹⁰⁾ 각 경찰서별 면적은 크게 상이하다. 예를 들면, 유치실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경찰서의 경우 94평에 달하지만, 가장 좁은 동부경찰서는 13평 정도이다. 유치인 적정수용¹¹⁾면에서도 천차만별이다. 서초경찰서는 188명이지만, 동부경찰서의 경우 2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초경찰서의 2001년 상반기 1일 최대 수용인원은 각각 65명, 69명에 달했다. 2분기 최대 69명이 수용되어 유치인 1인당 점유면적은 평균 1.36평이었다. 한편, 가장 좁은 동부경찰서의 경우, 상반기 1일 최대 수용인원이 각각 31명, 42명이었다. 따라서 유치인 1인당 평균 0.3평을 점유한 셈이다. 비교적 유치장면적이 넓은 노원경찰서의 경우(65평), 1분기 20名, 2분기 21명이 최대 수용되었는 바, 1인당 평균 3평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편차가 경찰서에 따라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다.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어느 경찰서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유치인의 수용공간도 매우 상이한

9) 임준태, 2001, pp. 463-464.

10) 동부경찰서의 경우, 유치실은 6개, 가장 많은 남대문의 경우는 16개실이다.

11) 한국 경찰실무에서는 유치장 적정수용능력을 「유치실 1평당 유치인 2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수용능력을 1평당 유치인 3명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정당국에서도 교도소내 독거제를 기준으로 1인당 적정 수용면적을 0.5평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급 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숫자도 수용적정인원에 상관없이 8~10名으로 고정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용적정인원이 26名(최대 39名)인 동부경찰서의 경우, 경찰관이 10名 배치되어 있지만, 수용적정인원이 188名(최대 282名)인 서초경찰서의 경우, 마찬가지로 10名이 배치되어 있다. 경찰력 배치가 치안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치장 관리부서의 변경

수사부서에서 유치인을 관리하는 현행체제는 수사목적으로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므로 청사관리나 직원복지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무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 유치인의 처우는 경무부서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만 행하도록 하여 수사관이 유치장내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의 처우를 통제하거나 이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국 경찰관서의 유치장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獨逸은 방범순찰부서, 뉴욕시경 역시 지역경찰서 방범순찰부서, 휴스턴경찰청의 경우는 별도의 Jail Division, 해리스 County의 경우도 별도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특히 英國의 경우, 유치장근무 경찰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유니폼경찰관으로 충원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수사업무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경찰관들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구금계속여부를 수사주무자가 아닌 독립적인 유치장근무 경찰관(경정급 이상)에 의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日本, 프랑스, 美國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에서도 대체로 수사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구금의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전적으로 수사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있다. 수사목적으로 유치인을 수시로 조사, 입·출감시키는 관계로 유치인을 수사경찰관의 수중에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단계의 구속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향후 유치장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인 수용시 혼거수용의 폐해 극복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¹²⁾』 등에 의하면,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바, 원칙적으로 피구금자에게는 독방이 제공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2명 이상이 같은 방을 사용할 때에도 여러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도 “피구금자는 통상 야간에 독거방에 기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거제를 천명하고 있다. 구금형태에 관하여 우리 행형법 제11조에서도 “독거제 원칙, 혼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상황과 괴리가 크다. 교정당국과 경찰실무에서는 독거수

12) 제 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55년 8월 30일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용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혼거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장에도 독거실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원칙에 입각하여 독거제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¹³⁾

물론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성인, 소년, 여성 유치인 분류수용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5조(유치실 및 보호실)에 따르면, 유치실 및 보호실의 면적은 6.6 m²(2평) 또는 13.2m²(4평)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혼거제를 염두에 둔 설계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거제 수용방식이 경찰단계 구속피의자에 대한 10日 이내 구금의 경우는 그 폐해가 적을 수 있지만, 일부 대용감방에 수용될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그 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에 이르고 있어, 혼거제의 폐해가 노정될 수 있다.

한편, 독거제 수용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행형법대안』 제10조 3항에서 독거실의 최소면적을 10m²(3평)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교도소의 2인 1실의 경우, 1.8m × 2.7m = 4.86m²인 바, 재소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1.47평에 달한다.

4) 전문인력의 배치

전국적으로 유치장 및 대용감방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은 유치장근무가 다른 일선 근무에 비해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특수 근무 부서로 인정받기 때문에 1年 전후의 기간동안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다. 최근 유치인 알몸수색과 관련한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입감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대두되고 상급 부서와 여론의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무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 등에 의하면,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가능한 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행형 원칙과 비교하면 한국 경찰의 현실은 매우 동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2000年度 형법 및 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구속된 피의자는 형법범 60,354名, 특별법위반사범 30,508名으로 약 90,000여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경험이 있다. 타 기관 위탁 입감자까지 합하면, 1일 평균 5,500여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있다. 아울러 1999年 즉결심판절차법에 의거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가 무려 10,000여명에 달하고 있다.¹⁴⁾ 특히 유치인에 대한 교화기능까지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분야 직무전문성 제고는 더욱 긴요하다 할 것이다.

5) 여성유치인의 별도 구획 수용

1999年에는 313,566名의 여성이, 2001年에는 290,931여명이 각각 형법 및 형사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1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여

13) 박재윤, 1997, 77면 ; 박찬운/이승호 외, 「한국감옥의 현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서울 : 사람생각, 1998, 213면.

1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용인 : 법무연수원, 2000, 246면. 1998년에는 34,000, 1997년에는 33,000, 1996년에 도 약 34,000여명이 구류형을 선고받아 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집행을 받은 바 있다.

성피의자 및 유치인을 담당하기 위한 전담 여성경찰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여성유치실의 경우 출입 및 생활이 남자유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 여성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입감 시에 순번제로 지정된 여성경찰관을 호출하여 신체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피의자가 유치장에 일단 입감 되면, 이들을 유치장내에서 실제로 24시간 감시하는 경찰관은 남자경찰관뿐이다. 최근 유치장 화장실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상이 된 것도 여성유치인이 남자경찰관의面前에서 용변(낮은 화장실 칸막이 등으로 인한 수치심유발)을 해결하지 못한 애로사항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3조에 의하면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하며,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獨逸경찰의 경우, 여성경찰관의 비율이 20%에 이르고,¹⁵⁾ 대부분의 24시간 순찰근무 조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되고 있으며, 뉴욕시경의 경우도 여성유치장에는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직 여자공무원이 배치되어 유치장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스턴경찰청 산하 구치소에서도 경찰관 신분이 아닌 여성 Jail Officer들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유치장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6) 유치장 시설¹⁶⁾ 등의 획기적 개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경찰개혁 일환(인권 친화적 유치장환경개선)으로 유치장 내에 에어컨 등 냉·난방기 비치, 조명시설 개선, 채광 및 조도 향상, 도서보급, 샤워시설 확충, 화상면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현재는 유치장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¹⁷⁾ 그러나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청사 건축 시기가 상이하고 시설수준 역시 대부분 다르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기응변 식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배정이 미흡하여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

향후 신축될 청사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행형원칙(분리수용, 거주설비,¹⁸⁾ 개인위

15) 우리나라 경우, 2000년말, 여자경찰관은 2,177명으로 전체 경찰관 중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16)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3조(시설 등)에 의하면, 유치장에는 유치실, 보호실, 접견실, 의무실, 감식실, 목욕실, 세면장, 변소 및 간수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 난방, 조명, 예비등, 비상구, 경보벨, 반침, 폐쇄회로 감시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17) 2001.3.22. 인터넷 한겨례. [경찰]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 “안방처럼”

경찰서 유치장 환경이 꽤 폐적해졌다. 22일 공개된 서울 종암경찰서 유치장 1층 6개방을 들려본 시민단체 대표 10명은 유치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창백했던 혈광등 조명에 할로겐등 빛이 더해져 안정감을 느끼게 한 것이 먼저 눈길을 끌었다. 콘크리트에 나무판자를 깔았던 마루 바닥도 전기판넬 위에 장판을 댄 안방처럼 바뀌었고, 입원실 같았던 흰색 벽도 은은한 미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에어컨이 새로 등장했고, 공기청정기도 새 것으로 교체됐다. 방안엔 50~60cm이었던 화장실 벽높이가 20~30cm쯤 높아졌고, 2개방에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좌변기가 놓여 있었다. 식판을 바닥에 놓고 쪼그린 채 음식을 먹는 대신 식탁이 놓이게 됐다. 자해방지용 방 1곳엔 철창에 스티로폼, 콘크리트 벽면에는 매트리스를 덧대놓았다. 활체어와 목발이 바치됐고, 철망이 가로놓였던 면회실 접견창구엔 인조잔디와 조화가 있었다. 유치장을 살펴본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 대표 김지길 목사는 “60~70년대에 비해 많이 바뀌어 놀랐다”며 “유치행정에서도 인권을 가장 먼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이송범 수사과장은 “지난달 초부터 서울 31개 일선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손질해왔다”며 “유치장이 교화의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kjlsb@hani.co.kr

18) 거주조건에 대한 국제인권수준으로서 「최저기준규칙」 제10조에서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생,¹⁹⁾ 의류 및 침구, 급식,²⁰⁾ 의료, 접견, 외부와의 교통, 종교, 도서, 시설직원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치장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조건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피구금자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는 유치인수에 비례하여 관련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치인 치료비 등의 비용문제에 대한 실비지급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내에는 위해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즉, 유치장내의 변기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도기재질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치연 입·출감사 일시체류 가능한 유치장 내부에 난초화분, 유리재질의 덮개, 접기류, 소형 소화기 등을 그대로 비치하고 있다.

최근 정신병환자, 약물남용 피의자 등의 증가로 예기치 못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선진 각국의 구금시설 기준을 참고²¹⁾하여 유치장사고를 미연에 방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침설비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 구체적으로는 기후조건, 공기량, 개인 차지 최저면적, 조명, 난방,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11조에서는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자연광선으로 득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통풍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도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않고 득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구금자 측에 입각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9) 한국의 행형법과 시행령에서는 각 제6장에 “의료와 위생”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위생 및 의료에 관한 몇 개의 원칙과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斷削이 원칙이며, 목욕횟수는 所長이 정하되, 단 6~7월은 5일에 1회 이상, 10~5월까지는 7일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있다. 재소자의 운동은 1일 1시간이내가 원칙, 독거수용자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20세미만은 3월 1회 이상, 기타 수형자는 6월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20) 식사와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음식의 맛(오스트레일리아 행형법)과 채식주의자 및 종교상의 식사습관(프랑스 형사소송법의 행형 부분)까지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21) 독일, 미국 등의 구금시설에서는 화장실 변기재질은 모든 파손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한 공청회

2005년 7월 인쇄

2005년 7월 발행

발행처 : 경찰청 수사국

인쇄처 : 경찰청 종합발간실
